

제211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 7. 6)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에 관한 의결 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	1
2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	3
3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4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5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	9
6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	11
7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	16

[거창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15. 6. 19.
- 나. 발 의 자 : 김향란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 2015. 6.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7. 2.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군의회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제출시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의결기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 사전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0조)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적용범위와 함께 해당 의안의 제출시기, 의안의 형식 및 자료제출, 의결기한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사전협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 등에 위법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42호

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15. 6. 19.
- 나. 발 의 자 : 박희순 의원 외 5명
- 다. 회부일자 : 2015. 6.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7. 2.

2. 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사항과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안제4조)
- 다.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라.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 바.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

사.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사항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영유아의 안전 보장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를,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에 있어서도 안전·급식·위생·차량
등 종합적인 안전 계획 수립 시행 토록하고 있으며, 또 안전
확보 시설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등에 위법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43호

[거창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15. 6. 19.
- 나. 발 의 자 : 이흥희 의원 외 10명
- 다. 회부일자 : 2015. 6.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7. 2.

2. 개정이유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사회적 약자와 범죄행위의 뜻
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2조제1호, 제2호)
- 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17조)
 - 살인, 성범죄피해를 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 약자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장례비와 위로금의 지급

- 지원대상자는 범죄피해자와 배우자, 직계친족으로 함
-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거창군 지역치안 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군민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사회적 약자와 범죄행위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살인, 성범죄피해를 입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사회적 약자에 한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자는 범죄피해자와 배우자, 직계친족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수 또는 거창경찰서장이 추천하고 거창군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심의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 상위법령은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38호

〔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6.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6.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7. 2.

2.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나. 세입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 세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거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제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따른 수입금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세출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 등에 위법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44호

거창군 국어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 2015. 6. 19.
- 나. 발 의 자 : 이성복 의원 외 6명
- 다. 회부일자 : 2015. 6. 19.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7. 2.

2. 제정이유

- 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군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제2조)
- 나. 용어의 정의와 군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문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 라. 공공기관 등의 국어 사용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마.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책임관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사. 국어 활용능력 우수자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4.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 이 제정 조례안은 군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군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 도모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내용으로는 국어발전에 대한 군의 책무와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문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련 법령 등에 위법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물론 그 밖에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39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6.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6.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7. 2.

2. 제안이유

○ 일반재산 매각

남상면 대산리 1034(답)은 토지는 신청자가 장기간 경작한 농지로서 저지대·사질토로 집중 강우시 침수가 잦고, 가뭄이 심한 토지로 성토를 통한 우량농지 조성은 형질변경허가가 불가한 토지임, 가조면 장거리 209-1(과)는 역촌마을에서 마을회관 건립 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주민의 불편해소를 도모하기위해 군에서의 보존 가치가 없는 농지를 매각하려는 것임

○ 장군봉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가조면 장군봉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이 없어 등산객들의 이용차량이 진입로에 주차함에 따라 소림사와 농지경작 농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마을주민·사찰방문객과 등산객

간에 마찰이 있어 주민 불편 해소와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사업

현 폐기물처리 매립장이 2018년 6월 말로 사용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 폐기물 처리시설 확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상단부에 위치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3. 취득재산

○ 일반재산 매각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매각시기	매각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7,299	101,440			
매각	토지	남상면 대산리1034	답	4,614	57,675	2016	보존부적합	거창군
매각	토지	가조면 장기리209-1	과	2,685	43,765	2016	보존부적합	거창군

○ 장군봉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단위:㎡,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2필지		2,043	4,432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	토지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709	답	1,043	3,504	2015 ~ 2016	장군봉 주차장 조성사업	오병순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산16-7	임	1,000	928			오병순

○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조성사업

(단위:㎡, 천원)

분	재산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17,854	35,366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산142-1	임	7,806	6,183	2016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사업	김태일
		거창읍 양평리 산142-2	임	1,176	999			이동호
		거창읍 양평리 산143	임	298	228			장석운
		거창읍 양평리 산144-15	임	1,905	964			박재철
		거창읍 양평리 산144-17	임	1,140	572			박태균
		거창읍 양평리 263	전	1,150	5,739			김인동
		거창읍 양평리 264	전	582	2,905			김태일
		거창읍 양평리 265	답	555	2,770			김태일
		거창읍 양평리 266	전	1,583	7,900			김태일
		거창읍 양평리 267	잡	1,094	5,405			김태일
		거창읍 양평리 267-1	답	565	1,701			김현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보존이 부적합한 일반

재산매각 1건(2필지), 주민불편해소와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 등 2건(13필지)의 취득재산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일반재산 매각은

- 남상면 대산리 1034번지는 집중 강우시 침수가 이루어지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질토에 따른 가뭄이 심한 농경지로서 우량농지 개량도 사실상 불가함
- 가조면 장기리 209-1번지는 노후 된 역촌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본 군유지 매각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 해 주려는 것임

● 취득재산은

- 가조면 장군봉 등산산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마을 주민과 사찰 방문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조면 사병리 709외 1필지(2,043㎡)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 거창읍 양평리 산142-1외 10필지(17,854㎡)는 2018년 6월 말로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연한이 종료됨에 따라, 사전 매립장 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은 타당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 남상면 대산리 1034번지 매각보류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유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5 - 40호

거창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심사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5. 6. 16.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5. 6. 16.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5. 7. 2.

2. 요구이유

- 거창국민체육센터(수영, 탁구, 볼링)를 군민의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거창국민체육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위탁대상 : 거창국민체육센터
- 나. 위탁시설 현황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스포츠파크 내
 - 개관일 : 2011. 3. 30.
 - 사업비 : 83억원(기공사비 60, 증축증공사비 23)
 -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시설규모 : 지하1층, 지상3층(건축면적/연면적 : 1,495㎡/3,591㎡)

구분	면적(㎡)	주요시설	비고
계	3,591.55	지하 1층, 지상3층	
지하	420.55	중앙제어실, 기계실, 전기실	
1층	1,484.25	수영장(성인풀 25m, 6레인, 어린이풀 18.5m, 2레인), 샤워실, 탈의실, 수영강사실, 안내실, 휴게실	
2층	621.75	사무실, 탁구장, 휴게실, 화장실	
3층	1,065.00	볼링장(10레인), 카운터, 화장실, 엘리베이터	공사중

※ 증축 공사 공사기간 : 2014. 11. 26. ~ 2015. 9. 26.

다. 인력 및 운영 프로그램

- 근무인력 : 16명(공무원4, 강사7, 안내·환경관리5)
- 운영 프로그램 현황

운영 종목	이용인원 (2014년기준)	수입 및 지출현황(천원)		
		수입(A)	지출(B)	증감(A-B)
수영 탁구	계 : 146,537명 -수영 : 134,538명 -탁구 : 11,999명	405,278 (수강 및 입장료)	계 851,076 -공무원보수 : 228,435 -근로자보수 : 294,060 -공공운영비 : 213,255 -재료비 : 42,290 -기타 등 : 73,036	△ 445,798

라. 위탁사무

- 거창국민체육센터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거창국민체육센터 시설종목(수영, 탁구, 볼링) 프로그램 운영

마.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시는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수탁자격

- 주소가 경상남도에 소재 개인, 법인, 단체

사.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자. 예산지원 : 운영·관리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동의안은 현재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창국민체육센터를, 전문 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물의 이용도 높여 국민체육 저변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상위 법령 및 조례 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1년간 경영평가 후 위탁연장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위탁시 계약조건을 달아 위탁

- ⇒ 위탁공모 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되
최초 1년간 운영에 대한 평가 후
2년 위탁 연장하는 조건을 달아 위탁